

공공도서관 등록제의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 적절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Special Provision for Depopulated Areas of the Public Library Registration System

나 은 엽(Eun Youp Rha)**

이 세 나(Sena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

요약: 본 연구는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와 관련하여 최근 추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례를 적용한 공공도서관의 예상 등록 실태를 살펴보고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사서수 및 정보서비스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집단면담을 통해 도서관 등록 및 특례에 대한 현장 사서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수 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공공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특례 적용 도서관의 장서, 서비스, 이용자수를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하였을 때, 특례 적용 도서관이 특례에서 제시하는 최저 기준인 사서 1인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도서관 등록 및 특례 적용에 대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특례에 제시된 사서수 기준 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사서 인력 증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례 경과 시점을 대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도서관이 법적 사서수를 채울 수 있는 중장기적, 단계적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도서관법, 공공도서관 등록제, 인구감소지역, 도서관법 특례, 사서수 기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cently added special provision for depopulated areas, in relation to the registration system for public libraries under the revised Library Law. To do so, we examined the expected registration rate of public libraries that applied the special provision,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atus of libraries that applied the special exemptions and those that did not, and identified the perceptions of librarian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system and the special provis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more than half of public libraries could not meet registration requirements due to a shortage of librarians. Furthermore, a comparison of the collections, services, and user numbers of libraries with and without special provision indicated that libraries under the provision would struggle to function effectively with the minimum standard of one librarian stipulated by the special provision. The public librarians concerned that the provision might make it even harder to increase librarian numbers in the long term. Consequently,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long-term, gradual plans to ensure that public libraries in depopulated areas can meet the legally required librarian staffing levels once the special provision expires.

KEYWORDS: Library Law, Public Library Registration, Depopulated Areas, Library Law Special Provision, Library Staffing Criteria

- * 이 연구는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적정 사서인력 산출 연구 용역'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음.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eyrha@knu.ac.kr / ISNI 0000 0005 1427 9484)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보조연구원(dreammor@naver.com / ISNI 0000 0005 1267 0973)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11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12월 3일 • 게재확정: 2024년 12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265-290, 2024. <http://dx.doi.org/10.16981/kliiss.55.4.202412.265>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도서관법은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제시하여,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 및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도서관법 제1조, 제2조, (시행 2023.8.8.)). 그래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의 정의, 유형, 책무, 도서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 시설, 장서, 사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사서 기준에 대해서 기준의 학문적 근거 부족, 실효성과 실행력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권나현, 2017; 윤명희, 2024; 윤희윤, 2018). 이에 따라 2022년 12월 8일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특히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법에서 제시한 시설, 장서, 사서 요건을 갖춘 후 2024년 12월 7일까지 공공도서관 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4).

그러나 도서관법 개정 이전에도 법에서 제시한 최소 기본 인원인 사서 인원 3명을 배치하지 못한 도서관이 전체 공공도서관의 40%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권나현, 2017). 개정된 도서관 등록제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도 전국 공공도서관 1,195개관 중 등록 가능한 도서관이 306개관으로 등록 가능 비율이 약 26%로 낮게 예상되었다(윤명희, 2024). 따라서 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한 공공도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미등록 공공도서관은 국가 지원 사업 제외,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제외, 정부 포상 제외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이성신 외, 2024). 따라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전 전체 공공도서관 중 등록 불가능한 도서관의 비중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공공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사서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제시되었다. 2024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도서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서 1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시한 것이다(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시행 2024.5.28.)).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이러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이용자, 시설 및 장서 규모가 작을 것이므로 한 명의 사서로도 도서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수가 적은 시골 및 농어촌 지역에 더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김신영, 차성중, 2022), 서비스 대상 인구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사서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권나현, 201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례로 인한 사서 인원 축소는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등록제에서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특례가 적절한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RQ)는 다음과 같다.

- RQ 1.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적용하였을 경우 등록 가능한 공공도서관은 어느 정도인가?
- RQ 2. 특례 적용 공공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공공도서관의 법정 사서수 및 정보서비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 RQ 3. 공공도서관 등록제와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적용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질문을 토대로 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례 적용 후 예상되는 공공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을 파악하고 특례 적용 도서관 사서수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을 구분하여 법정 사서수 및 도서관 서비스 관련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의 적절성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 면담을 수행하였다.

2. 선행연구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에 대한 연구로 윤명희(2024)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2023년 5월, 2024년 1월에 진행한 공공도서관 등록관청협의회에 참여하여, 공공도서관 예상 등록률과 등록관청 담당자들의 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예상 등록률이 26%로 낮은 것과 사서 충원의 어려움, 등록 관청 이원화, 지역 불균형 심화, 미등록 도서관에 대한 조치 미비 등이 등록관청 담당자들에게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정 전 도서관법의 사서 배치 기준에 대한 연구로는 권나현(2017), 윤희운(2018) 등의 연구가 있다. 권나현(2017)은 도서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서 배치 기준의 타당성을 국내외 공공도서관 인력배치 기준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 면적과 장서량에 의해 결정되는 사서 증원 기준은 법정 필요 인력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으므로 봉사대상 인구 기준으로 사서 증원 기준을 단순화할 것, 사서 배치 기준을 서비스 수준별 2-3단계로 차등하여 제시할 것, 사서 배치 기준 뿐 아니라 일반 직원 기준을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윤희운(2018)은 도서관법에서 제시하는 사서 배치 기준의 쟁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정 모형 및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포함되는 사서직 정원 산출에 도서관법에서 제시하는 사서

배치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점, 기본 인력으로 제시한 사서 인력 3명과 면적 기준, 장서 기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는 점, 사서 뿐 아니라 다른 직렬 인원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면서 면적과 장서가 아닌 봉사 대상 인구를 사서 증원 기준으로 정하고, 사서 정원의 1/3은 기타 상근 직원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영석(2013)은 공공도서관 인력 배치 현황을 도서관법, '한국도서관 기준', 'IFLA/UNESCO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서 배치 기준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도서관 인력 배치는 '한국도서관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고, 국제 기준에 가장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서관 기준'에서도 직원 충원율은 78.0%인 반면 사서 충원율은 44.5%로 사서 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공공 도서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 기준 및 공공도서관 등록

전면 개정 전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를 6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별 시설, 장서 기준을 제시했다. 사서 기준의 경우 기본 사서 3명에,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을 더하고 장서가 6,000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000권마다 사서 1명을 추가로 더해 결정하게 된다(도서관법 시행령 별표2, (시행 2021.6.23.)). 이와 같은 사서 배치 기준은 사서수 증원의 과다 문제, 사서 기본 인원과 증원 기준의 논리적 설명 결여, 사서직 외 일반직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서 수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되며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하는 법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도서관 현장의 사서수는 도서관법에서 제시하는 사서수 기준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권나현, 2017; 윤희윤, 2018). 이와 같은 법과 현장의 괴리는 전국 공공도서관 중 도서관법에서 기본 인원이라 제시하고 있는 사서수 3명을 배치하지 못한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40.5%나 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권나현, 2017).

2022년 12월 8일 전면 개정, 시행된 도서관법에서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서, 시설, 장서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에 대해 등록을 신청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 공공도서관 등록은 사립 공공도서관에 한하여 진행하는 행정 절차였으나, 2022년 12월 전면 개정되면서 이를 국공립 공공도서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도서관법 부칙 제3조에 의해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법의 전면 개정 이후 2년 이내 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법은 2022년 12월 8일 전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2024년 12월 7일이 등록 기한이다(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4). 이러한 등록제 시행은 도서관이 기본적인 인력, 시설, 자료 등을 갖추어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박용수, 2017). 정해진 기한 내 등록을 진행하지 못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사업 제외,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제외, 정부 포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제시하여 공공도서관 등록을 촉진하고 있다.

등록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봉사대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6단계로 구분하여 시설, 장서 기준을 차등적으로 제시한 기존 기준과 달리, 장서 기준에서만 서비스 대상 인구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시설 기준에서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즉 전면 개정, 시행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 시설 기준으로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면적 330㎡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면적 264㎡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장서에 대해서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경우 1만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인구수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경우 1만 5천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 인구수 5만명 이상인 경우 3만점 이상의 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서 기준은 3천점 이상이다. 사서 기준은 기본 사서를 4명으로 두고, 서비스 대상 인구수 2만명을 기준으로 2만명이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추가하고, 도서관 면적 330㎡를 기준으로 330㎡를 초과할 때마다 사서 1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사서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이전 법에서는 기본 사서가 3명이던 것이 개정 이후 4명으로 달라졌으며, 개정 이전에는 시설, 장서 기준으로 사서수를 증원했던 것이 개정 이후에는 시설, 서비스 대상 인구 기준으로 사서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달라졌다. 또한 개정 이전 시설, 장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봉사대상 인구’는 도서관이 위치한 시, 구, 읍, 면 지역의 인구를 의미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광역시, 도의 총 인구수를 해당 광역시, 도의 관할 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수로 나눈 값을 사용하도록 하여 같은 광역시나 도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동일한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장서와 사서수를 결정하게 되었다(윤명희, 2024). 또한 법에서는 ‘이동도서관·스마트 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서비스마다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질의 결과 장관이 고시한 도서관 서비스가 없음을 확인하여, 이로 인한 사서수 증원은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였다(〈표 1〉 참조).

또한, 2024년 5월 28일 개정 시행된 도서관법 시행령(2024.5.28.)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등록 신청하는 경우 사서가 1명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도록 사서 기준을 낮추는 특례를 제시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전국 공공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되며, 인구감소지역이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지역에 더 많은 만큼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표 1〉 도서관법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항목	내용		
개정 전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시행 2021.6.23.))	사서 요건	기본 사서 3명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 1명 증원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 1명 증원		
	시설 요건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건물 면적(㎡)	열람석(좌석 수)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 2만명 미만 기준 적용			
도서관 자료 요건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기본 장서(권)	연간 증서(권)	
	2만 미만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 인구 2만명 미만 기준 적용				
비고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된 해당 시, 구, 읍, 면 지역의 인구			
개정 후 (도서관법 시행령별표2, (시행 2024.5.28.))	사서 요건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공공도서관 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일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사서수 추가 $\text{사서수} = \frac{\text{공공도서관당 인구수} - 2\text{만명}}{2\text{만명}}$ 도서관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사서수 추가 $\text{사서 수} = \frac{\text{도서관면적} - 330}{330}$		
	시설 요건	국공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0㎡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264㎡ 이상		
	도서관 자료 요건	국공립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미만: 1만점 이상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가 2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만 5천점 이상 공공도서관당 인구수가 5만명 이상: 3만점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		
	비고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란 해당 시, 도의 총 인구수를 해당 시, 도의 관할 지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2. 인구감소지역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7.10.)).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 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와 같은 8개 지표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지정안을 마련하면 관계 기관 협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 고시하게 된다. 2021년 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선정되었으며, 5년 단위로 검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행정안전부, 2021). 이와 같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10년간 투입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특례 제정 등을 통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장문현, 2024; 지방시대위원회, 2022.2.8).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뜻한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9.20.)). 또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에 포함되는 시설과 시설에 도달하는 소요 시간을 기초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로 마을 단위 시설 11개 및 지역거점단위 시설 7개가 있으며, 이중 공공도서관은 마을 단위와 지역거점단위 모두에서 학습 영역 시설로 제시되어 있다. 마을 단위 공공도서관의 최저 기준은 도보 10-15분이며, 지역거점단위 최저 기준은 차량 10분이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다만 이 기준은 지역별 공공도서관의 수, 도서관 간 거리만을 고려한 수치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기초생활 인프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문헌정보학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많지 않으나(김신영, 차성중, 2022), 인구감소지역과 관련 있는 정보소외계층 및 농어촌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 및 서비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공공도서관 역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윤희운(2012)은 농어촌 지역 주민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 전략에 대해 제안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 도서관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접근성 문제, 디지털 격차, 맞춤형 서비스 부족 등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덕현, 구본진(2021)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중심으로 농어촌과 도시 지역이 혼합된 지역에서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 간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동형 도서관, 다양한

연령층에 맞춘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영, 차성중(2022)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의성군의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과 핵심 전략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촌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물리적 접근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김보일, 김명수, 안창호(2015)는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역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보 제공 방식의 다양화와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현희, 이성숙(2015)은 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비교하여 지역 지식정보서비스를 분석하였는데,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 도서관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 농어촌 지역의 정보 서비스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희수, 김기영(2014)은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농업 관련 정보, 생활 정보 등과 같은 실용적 정보에 기초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장경, 김혜영(2024)은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및 해외 주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지역정보서비스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 디지털 서비스 강화,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헌들을 통해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의 주된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사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오히려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문화 인프라와 정보격차를 고려했을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다각화되어야 하는 것이다(김신영, 차성중, 2022).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탐색적 연구는 새로운 연구 분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연구 문제에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Babbie, 2001). 도서관 등록제와 특례가 최근 제정 및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해가며 연구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탐색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혼합 연구 방법은 질적 접근법과 양적 접근법을 결합하여 연구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고 더 많은 의미를 생성하고 데이터 해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Arora & Stoner, 2009). 특히 혼합 연구 방법은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나 기존 연구의 확장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ene, 2007). 이에 따라 혼합 연구 방법이 도서관 등록제 및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과 같은 새로운 연구 문제를 탐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양적 데이터인 도서관 통계 데이터와 현장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얻어진 질적 데이터를 함께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 통계 데이터 분석

공공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의 2023년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023년 공공도서관 데이터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이다. 공공도서관 중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234개관이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1,004개관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특례까지 적용하여 등록가능한 도서관 비율을 확인해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76.6%가 등록 가능한 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40.5%만이 등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는 지자체 운영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관 미등록에 대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공공도서관 데이터 중 면적 또는 사서 데이터가 없는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전국 1,004개 공공도서관 데이터가 분석 대상이다.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데이터는 『공공도서관 적정 사서인력 산출 연구 용역』(이성신 외, 2024)을 진행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경상북도 도서관 데이터는 2024년 7월 기준 데이터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도서관 등록 요건으로 시설, 장서, 사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23년 공공도서관 데이터 중 지자체 운영 도서관을 살펴본 결과 전국 1,004개 도서관 중 시설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도서관은 79개관으로 전체 7.9% 수준이다. 장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도서관은 전국 1,004개 도서관 중 2개관으로 0.02% 정도이다. 반면 사서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서관은 597개관으로 59.5%를 차지한다. 즉 시설과 장서 요건 미충족보다 사서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도서관 미등록 문제가 더 클 것이므로, 본 연구는 사서 기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2. 집단 면담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24년 7월 24일 경북 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현장 사서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도서관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 경북 지역의 경우 도서관의 법정 사서 수 대비 필요 사서 수가 높고 특례로 인해 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는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경북 지역이 특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면담 대상 집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집단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경북도서관 및 경상북도 내 공공도서관 10개관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 사서 12명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대면으로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크게 공공도서관 인력 현황과 도서관 등록제에 대한 의견, 특례에 대한 의견이라는 큰 틀 아래, 진행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토론자가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피면담자의 연구참여동의서를 받고 동의하에 녹음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전사하였다. 전사 후 1차 코딩 단계로 오픈 코딩을 수행하여 의미 있는 단어 및 구절을 추출하여 초기 코드와 범주를 만들었고 2차 코딩을 통해 최종 주제 및 범주를 구성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작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코드 간 반복적인 비교분석법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코드를 삭제하고 중복되는 코드가 없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지역별 등록가능한 도서관 비율

2023년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을 위한 사서수를 계산한 후, 실제 사서 수와 비교하여 도서관 등록이 가능한 도서관 수를 확인하였다. 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기본 사서수 4명에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반영한 증원 인원과 도서관 면적을 반영한 증원 인력을 더하여 등록에 필요한 법정 사서수를 계산하였고, 이를 도서관 사서수와 비교하여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때 3.1에서 언급한대로 사서 요건만을 기준으로 도서관 등록 여부를 판단하였다.

지역별 등록 가능한 도서관 수와 등록 비율은 <표 2>와 같다. 전국 1,004개 공공도서관 중 등록 가능한 도서관은 407개관, 등록 불가능한 도서관은 597개관으로, 전체 도서관 기준 등록 가능 비율은 40.5%이다. 사서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도서관 등록이 불가능한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절반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의 등록 가능 비율이 70.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68.6%), 대구(57.1%), 경남(52.0%), 강원(50.0%) 순이다. 반대로 등록 가능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6.7%이며, 다음으로 대전(16.7%), 경기(19.9%), 광주(21.7%), 충북(23.1%)이다. 등록 가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10개 중 도 단위 지역은 6개이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7개 중에서 도 단위 지역은 2개이다.

〈표 2〉 지역별 등록 가능 도서관

지역	전체 도서관 (관)	등록 가능 도서관					등록 불가 도서관(관)
		등록 가능 도서관(관)	등록 가능 비율(%)	특례 적용 도서관(관)	특례 미적용 도서관(관)	특례 적용 비율(%)	
서울	178	126	70.8	0	126	0	52
경기	302	60	19.9	6	54	10.0	242
인천	51	21	41.2	2	19	9.5	30
강원	42	21	50.0	19	2	90.5	21
충북	39	9	23.1	7	2	77.8	30
충남	42	20	47.6	16	4	80.0	22
대전	24	4	16.7	0	4	0	20
세종	15	1	6.7	0	1	0	14
경북	45	22	48.9	17	5	77.3	23
경남	50	26	52.0	7	19	26.9	24
대구	28	16	57.1	6	10	37.5	12
울산	17	4	23.5	0	4	0	13
부산	35	24	68.6	4	20	16.7	11
전북	46	19	41.3	16	3	84.2	27
전남	51	25	49.0	20	5	80.0	26
광주	23	5	21.7	0	5	0	18
제주	16	4	25.0	0	4	0	12
계	1,004	407	40.5	120	287	29.5	597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은 광역시 단위보다 도 단위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그래서 특례 적용이 가능한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 단위의 등록 가능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등록 가능 도서관 중 특례 적용 도서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90.5%이며, 다음으로 전북(84.2%), 전남(80.0%), 충남(80.0%), 충북(77.8%), 경북(77.3%) 순이다. 이들 지역의 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은 강원 50%, 전북 41.3%, 전남 49.0%, 충남 47.6%, 충북 23.1%, 경북 48.9%으로, 이 지역의 높은 등록 가능 비율은(충북 제외) 특례 적용 도서관이 많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공공도서관이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사서수를 계산하였다(〈표 3〉 참조). 1관 당 필요 사서수는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사서수 요건에 따라 법정 사서수를 계산한 후 현재 사서수를 뺀 값으로, 필요한 사서수 합을 등록 불가능한 도서관 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전국 등록 불가 도서관 597개관에 필요한 사서수는 2,090명이며, 이는 1관당 3.4명 수준이다. 1관당 필요한 사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5.7명이며, 다음으로 충북(4.2명), 경기(3.9명), 충남(3.9명), 전북(3.7명) 순이다. 1관당 필요 사서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 2.1명이며, 다음으로 대구(2.4명), 대전(2.7명), 울산(2.8명), 제주(3.0명), 강원(3.0명) 순이다.

〈표 3〉 등록 불가 도서관의 필요 사서수

지역	1관당 사서수 평균(명)	등록 불가 도서관(관)	필요 사서수(명)	1관당 필요 사서수(명)
서울	8.4	52	111.5	2.1
경기	5.9	242	942.0	3.9
인천	5.5	30	102.5	3.4
강원	3.2	21	62.5	3.0
충북	3.5	30	125.5	4.2
충남	4.3	22	86.0	3.9
대전	5.3	20	54.5	2.7
세종	5.7	14	22.0	1.6
경북	4.6	23	130.0	5.7
경남	6.2	24	75.0	3.1
대구	6.5	12	28.5	2.4
울산	5.0	13	36.0	2.8
부산	9.2	11	36.0	3.3
전북	4.0	27	100.5	3.7
전남	3.3	26	79.5	3.1
광주	5.1	18	62.0	3.4
제주	4.3	12	36.0	3.0
계	5.9	597	2,090	3.4

〈표 2〉와 〈표 3〉를 함께 살펴보면, 세종, 대전, 울산의 경우 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은 낮지만 1관당 필요한 사서수는 세종 1.6명, 대전 2.7명, 울산 2.8명으로 낮은 편이다. 이들 지역은 등록 가능한 도서관 수가 적어도,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서 채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덜할 것이라 판단된다. 반면 경기, 충북의 경우 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이 낮고 1관당 필요 사서수는 높으므로, 다른 지역보다 도서관 등록 과정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경북, 충남, 전북의 경우 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1관당 필요한 사서수는 많은 편이다. 이 지역들 역시 도서관 등록을 위한 사서 채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특례 적용으로 공공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이 증가한 지역이 있으므로, 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 뿐만 아니라 사서수 기준 충족을 위한 필요 사서수까지 함께 살펴봐야 도서관 등록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수월할 것이라 판단된다.

2.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비교

가. 법정 사서수 비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제정된 특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 이상이면 도서관 등록이 가능하다. 일반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본 사서 4명에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 인구수와 도서관 면적 기준에 따라 사서수를 추가하여 법정 사서수가 정해지는 것과 비교하

면, 사서수 기준을 매우 크게 완화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선정하므로(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비해 서비스 대상 인구가 적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도서관 방문자수, 대출권수 등이 적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특례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사서 1명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만큼 장서, 시설 및 이용률 등의 규모가 작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을 구분하여 현재 사서수 및 법정 사서수 평균을 계산하였다.

〈표 4〉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1관당 평균 사서수 비교

지역	구분	도서관 수(관)	현 사서수(명)	법정 사서수(명)
서울	특례적용	-	-	-
	미적용	178	8.4	6.5
경기	특례적용	6	4.5	9.0
	미적용	296	5.9	8.6
인천	특례적용	4	1.5	6.8
	미적용	47	5.8	6.9
강원	특례적용	22	1.6	4.8
	미적용	20	4.9	7.9
충북	특례적용	10	3.7	6.5
	미적용	29	3.5	7.6
충남	특례적용	18	2.5	5.6
	미적용	24	5.7	8.5
대전	특례적용	-	-	-
	미적용	24	5.3	7.3
세종	특례적용	-	-	-
	미적용	15	5.7	6.1
경북	특례적용	17	3.7	6.2
	미적용	28	5.1	8.0
경남	특례적용	7	3.0	6.7
	미적용	43	6.7	7.5
대구	특례적용	7	2.2	5.3
	미적용	21	8.0	6.9
울산	특례적용	-	-	-
	미적용	17	5.0	7.1
부산	특례적용	4	7.3	7.5
	미적용	31	9.5	8.9
전북	특례적용	16	3.1	5.4
	미적용	30	4.6	7.8
전남	특례적용	24	2.7	5.7
	미적용	27	3.9	6.2
광주	특례적용	-	-	-
	미적용	23	5.1	7.6
제주	특례적용	-	-	-
	미적용	16	4.3	6.4
계	특례적용	135	2.9	5.9
	미적용	869	6.3	7.6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전국 평균 사서수의 경우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현재 사서수 평균은 각각 2.9명, 6.3명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약 46%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대구는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가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사서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편이며(인천 1.5명, 5.8명 / 대구 2.2명, 8.0명), 부산, 경기도는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가 특례 미적용 도서관 사서수의 3/4 수준으로 차이가 덜한 편이다(부산 7.3명, 9.5명 / 경기 4.5명, 5.9명). 대부분의 지역이 특례 적용 도서관보다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사서수가 더 많았지만 충북은 예외적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는 3.7명,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사서수는 3.5명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가 더 많았다.

또한 특례 적용 도서관의 경우 사서수가 1명 이상이면 공공도서관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 대상 인구수와 도서관 면적을 적용하여 사서수 기준(법정 사서수)을 계산한 후, 이를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하였다. 전국 평균을 먼저 살펴보면 특례 적용 도서관의 법정 사서수는 5.9명, 특례 미적용 도서관은 7.6명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법정 사서수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약 78% 수준이다. 특례 적용 도서관과 미적용 도서관은 서비스 대상 인구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정 사서수의 차이는 도서관 면적의 차이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례 적용 도서관에 일반적인 사서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의 사서수 차이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도서관 정보서비스 비교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례 적용 도서관의 정보서비스가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을 구분하여 도서관 면적, 장서, 방문자수, 대출권수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 간의 비교를 위해 특례 적용 도서관의 면적, 장서, 방문자수, 대출권수 평균값을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평균값으로 나눈 백분율을 함께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간 격차, 형평성을 비교하는 선행연구에선 서비스 대상 인구, 연면적, 도서수, 직원 및 사서수, 운영 예산, 이용자수, 대출책수, 프로그램 참가자수를 이용하거나(윤희윤, 2022), 행정 직 및 사서수, 운영 경비, 면적, 좌석수, 장서수, 이용자수, 서비스 만족도를 이용한다(박진규, 김인, 2016).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서는 장서, 직원, 좌석수, 이용자수, 연속간행물, 면적, 인건비, 비도서자료, 대출권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유경중, 2010).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와 사서수의 적절성을 비교하기 위해 도서관 면적, 장서, 방문자수, 대출권수를 활용하였다.

〈표 5〉 면적, 장서, 방문자수, 대출권수 평균 비교

지역	구분	도서관수(관)	면적(㎡)	장서(권)	방문자수(명)	대출권수(권)
서울	특례적용	0	0	0	0	0
	미적용	178	910	145,309	179,163	13,107
경기	특례적용	6	1,892	91,839	84,227	3,531
	비율(%)		114.3	74.7	42.1	28.6
	미적용	296	1,656	122,867	200,084	12,342
인천	특례적용	4	1,018	38,905	34,863	1,210
	비율(%)		98.4	55.8	23.6	5.9
	미적용	47	1,035	69,771	147,460	20,620
강원	특례적용	22	713	51,255	42,359	2,466
	비율(%)		41.8	62.4	36.7	20.1
	미적용	20	1,707	82,095	115,263	12,275
충북	특례적용	10	1,323	98,473	54,353	6,365
	비율(%)		88.5	110.1	74.0	38.0
	미적용	29	1,495	89,479	73,463	16,761
충남	특례적용	18	948	70,257	41,556	5,224
	비율(%)		49.0	56.4	24.7	35.3
	미적용	24	1,934	124,469	167,980	14,787
대전	특례적용	0	0	0	0	0
	미적용	24	1,222	131,954	189,466	7,846
세종	특례적용	0	0	0	0	0
	미적용	15	1,109	53,825	87,012	9,768
경북	특례적용	17	1,179	67,847	49,137	2,780
	비율(%)		66.8	65.2	34.2	24.1
	미적용	28	1,766	103,982	143,717	11,555
경남	특례적용	7	1,062	81,014	87,336	11,231
	비율(%)		81.8	73.6	66.0	90.0
	미적용	43	1,299	110,126	132,375	12,480
대구	특례적용	7	502	31,328	36,326	1,602
	비율(%)		46.8	35.0	20.0	9.2
	미적용	21	1,072	89,608	181,332	17,408
울산	특례적용	0	0	0	0	0
	미적용	17	1,066	76,073	180,275	10,403
부산	특례적용	4	891	108,428	137,184	17,031
	비율(%)		61.4	94.6	72.6	78.2
	미적용	31	1,450	114,644	188,832	21,778
전북	특례적용	16	960	66,098	54,389	3,064
	비율(%)		59.8	77.7	45.8	34.9
	미적용	30	1,606	85,044	118,774	8,769
전남	특례적용	24	1,004	73,394	36,261	6,118
	비율(%)		81.7	65.4	29.4	63.2
	미적용	27	1,229	112,159	123,456	9,687
광주	특례적용	0	0	0	0	0
	미적용	23	1,271	87,595	188,024	6,686
제주	특례적용	0	0	0	0	0
	미적용	16	1,219	113,562	95,479	25,056
계	특례적용	135	1,003	68,983	50,075	4,734
	비율(%)		73.2	72.3	29.5	35.6
	미적용	869	1,371	95,384	169,538	13,291

〈표 5〉에서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특례 적용 도서관의 면적 평균은 1,003㎡, 장서는 약 6만 9천권, 방문자수는 약 5만명, 대출권수는 약 4,700권이다.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면적 평균은 1,371㎡, 장서는 약 9만 5천권, 방문자수 약 17만명, 대출권수는 약 1만 3천권이다. 특례 적용 도서관의 평균값은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면적 73.2%, 장서 72.3%, 방문자수 29.5%, 대출권수 35.6% 수준이다. 특례 적용 도서관의 면적, 장서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72-74% 수준이며, 특례 적용 도서관의 방문자수, 대출권수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약 30-39%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특례 적용 도서관은 특례 미적용 도서관보다 면적, 장서 규모, 방문자수, 대출권수가 작음을 알 수 있으며, 면적과 장서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3/4 수준, 방문자수와 대출권수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1/3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국 평균은 특례 적용 도서관이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하여 방문자수, 대출권수가 30-39%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도 있다. 예를 들어 충북의 경우 특례 적용 도서관의 장서는 약 9만 8천권으로 특례 미적용 도서관보다 많으며, 방문자수는 약 5만 4천명으로,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74.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경남의 경우 특례 적용 도서관의 방문자수 약 8만 7천명, 대출권수는 약 1만 1천권으로,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방문자수는 66.0%, 대출권수는 90.0% 수준이다. 부산의 경우 특례 적용 도서관의 방문자수 약 13만 7천명, 대출권수는 약 1만 7천권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73-79% 수준이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방문자수, 대출권수가 특례 미적용 도서관 수준의 절반보다 많은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례 적용 공공도서관의 사서 기준을 1명 이상이라고 일괄적으로 제시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사서 업무 과중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4〉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국 기준 특례 적용 도서관의 현재 사서수는 2.9명,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현재 사서수는 6.3명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46% 수준이다. 방문자수, 대출권수는 특례 적용 도서관이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30-39% 수준이므로,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이 동일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특례 적용 도서관의 사서수는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반면 도서관법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법정 사서수 평균은 7.6명이다. 현재 도서관 면적, 장서, 방문자수, 대출권수가 유지된다고 할 때 특례 미적용 도서관 사서수가 증가하는 만큼 특례 미적용 도서관 사서수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법정 사서수 7.6명에 30-39%를 적용하면 2.3-3.0명이므로, 특례 적용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현재 사서수의 유지 또는 소폭 증가가 필요하다 말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인구감소지역의 사서수 기준은, 특례 적용 도서관의 현재 사서수를 고정하거나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동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특례 적용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된다.

3.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에 대한 사서 인식

도서관 등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사서들이 도서관 등록제와 특례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단 면담을 통해 의견에 대한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등록제의 문제점과 특례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가. 도서관 등록제에 대한 인식

우선 등록제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부정적,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무엇보다 등록제 자체가 사서 인력 확보 및 서비스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라고 했으나 실제로 사서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등록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편법이 가능한 임시방편적 등록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 도서관에서 기한 내 도서관을 등록시키기 위해 임시로 이동하여 충원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충원은 결과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고 등록 이후 원래대로 돌아가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문제였다. 특히 본관과 분관이 함께 있는 도서관의 경우, 등록만을 위한 목적으로 분관에 있는 사서가 임시로 본관으로 이동하여 인원을 채우는 현상이 지적되었다.

“지금 중앙[도서관]마저 안 돼서, 만약에 중앙[도서관]이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면 수시 인사를 내서 분관에 있는 사서를 잠시라도 이렇게 우리한테 발령을 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이라도 등록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돌아오고 한 2년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지금 등록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깐요.” (참여자 7)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사서 공무원 인사 담당자의 사서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라는 근본적 문제였다. 사서직이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 업무가 지자체 소관으로 인사권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와 같은 비사서직 공무원들이 도서관과 사서직의 중요성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제 및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제 시행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인력 충원의 효과적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정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 놔줍니다. 그 자치단체 기준이 기초 [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기초 [자치단체]에도 자치단체장이 사서직 정원을 정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조례 개정을 광역시도에서 시군구까지 정원을 정해서 하라는 지침이에요. 이게 현실을 모르고 만든 지침이거든요.” (참여자 12)

“(지자체의) 인사 부서에서는 도서관에는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등록제로 변경되고 등록이 안 되면 국비를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문체부의 공모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도서관 등록하지 말고 그 공모사업 포기하자, 그 돈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인사부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참여자 6)

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 등록 인원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도서관 신축 건립 및 리모델링으로 인해 서비스 공간이 확대되면서 사서 인력 배치 기준 역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등록제의 기준 완화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저희가 19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사서 정규직이 저희 6명밖에 없고, 기간제 선생님은 7월에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다행히 사서 자격증 가진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시고 9월 되면 두 분 정도 더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다 하니까... (중략) .. 저희는 인구 감소 인구 특례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풀어가야 될지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참여자 4)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성을 조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관이 개관이 되었지만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합문화센터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복합문화센터의 건축 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 부분에서 적용하는 것도 사실상 맞지 않아서 ‘서비스 공간을 어디까지를 적용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면적을 적용하는 부분들도 어떤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 1)

도서관 등록제 자체가 비사서 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사서 인력과 함께 전기, 기계, 전산 등을 담당하는 비사서직도 중요한 인력 집단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났다. 현재로선 사서직 인력 충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서를 충원하면 등록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비사서직이 없으면 도서관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비사서직과 함께 고려하여 도서관 운영 방안을 계획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비슷하게, 도서관 사서직 수가 아닌 도서관 필요 직원 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역시 개진되었다.

“비사서가 없으면 관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냉난방 없으면 관 자체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특히 도서관은 대부분 별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직렬은 다 있어야 됩니다.” (참여자 5)

나. 특례 적용에 대한 인식

도서관 등록제의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 사서들은 특례 적용 이후의 문제와 특례 적용을 기반으로 한 1인 사서 체제 시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례 적용 이후의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로 당장 1명만을 배치해도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 임시방편적이고 등록이 된 이후 더 이상 인원을 늘리거나 사서직 증원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보였다.

“한시적 통과라고 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어서 등록이 되는데 등록을 하면 끝나잖아요, 차라리 26년 2월까지 등록 기간을 그냥 유예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까지 어떻게든 최소 인력이라도 맞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으로 등록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특례 받는 시점에서 멀리서 봤을 때 안 좋은 거죠. 특례법이 잠시만 적용되는 거고 후에는 또 다시 원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참여자 8)

또한 아무리 규모가 작고 인구감소지역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서 한 명으로는 운영이 어려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윤명희 (202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명의 등록 이후 사서에게 도서관 업무의 과부하가 오고 장기적으로 도서관 발전이 없을 것이란 부정적 견해가 개진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인구감소 지역 특례법을 적용받아서 사서 한 명만 있으면 등록이 되는 상황인 한테 저희도 지금 신규 도서관인데다 인원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규 사서직은 저 한명 밖에 없구요, 인구 감소 지역 특례를 받아가지고 장기 등록을 하는 건 둘째 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원 티오 같은 경우에는 더 걱정이 되네요” (참여자 9)

따라서 많은 현장 실무자들은 사서 인력 증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특례 적용 이후에는 기한을 두고 법정 사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특례 적용의 유예 기간 이후에는 법적 최소 기준인 4명 이상의 사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현재 특례에서 허용한 사서수 충족 요건 완화가 당장은 등록을 쉽게 하는 기반이 되지만 향후 인사 부서가 사서 충원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서들은 현재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한시적 등록에 그치고 행정적 등록만을 위한

절차로 인식되어 오히려 사서 인력 배치 및 업무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개선하였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적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사서 인원 보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서직 및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변화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도서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도서관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례법을 받아서 등록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우리가 티오를 증원시킬 때에 도서관 기존에 있는 업무 외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인사팀에 홍보를 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2)

아래 표는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 적용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도서관 등록제와 특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

구분	의견
도서관 등록제에 대한 문제점	편법을 사용하는 임시방편적 제도
	인사 담당처의 사서직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재
	지역적 특성 반영 부재
	도서관 내 다양한 직원 유형 고려 부재
등록제의 특례 적용에 대한 문제점	특례 경과 후의 중장기 계획 부재
	사서 1인 이상 등록 가능 기준의 문제
개선 방안	도서관 및 사서의 중요성 제고
	도서관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과 등록 가능 비율 제고를 위해 최근 추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을 때 등록 가능한 공공도서관의 비율,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의

사서수 및 정보서비스 규모의 차이,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 적용에 대한 현장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사서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한 공공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등록 가능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등록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것보다는 해당 지역에 특례 적용 공공도서관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례 적용 도서관의 장서, 서비스, 도서관 이용 규모를 특례 미적용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한명의 사서가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 적용에 대해서 현장 사서들은 대부분 부정적,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고 특히 특례 적용 도서관의 경우 임시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지만 그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법정 사서수 인원이 충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또한 여전히 지역사회에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을 현장 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관 등록제는 공공도서관 사서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 확보 및 도서관 인력 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윤명희, 2024).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당장 등록제 시행 시 사서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도서관 등록 가능 비율이 절반 이하일 것으로 드러났고 그나마 등록 가능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한시적 제도인 특례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어 1명이라는 최소 인원으로만 일단 등록이 진행된다면 사서수 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며(윤명희, 2024) 결국 현재의 인력 상황보다 더 악화되는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도서관인 특례 적용 도서관의 법정 사서수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는 향후 도서관 발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서수가 충분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도서관은 농, 귀촌인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김신영, 차성중, 2022). 면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아무리 규모가 작은 도서관일지라도 사서 고유의 업무 외에도 도서관 운영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타 업무도 많기 때문에 1인으로는 업무 과중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사서로는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양질의 정보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 도서관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경과 기간 이후 인력 배치 상황을 대비한 구체적인 제안과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저 기준인 사서 1명을 배치하고 이와 동시에 법에서 정한 사서 배치 기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중장기 인력 배치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단계별 논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까지로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12월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가며 등록제가 애초 목표한 바와 같이 사서 인력 현황 개선과 지역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도서관 등록이 이루어진 2024년 12월 이후 등록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특례 적용 도서관에서 드러난 특례 적용의 영향 및 결과, 특례 적용의 문제점 등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등록제의 시행 이후 다양한 지역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서관 등록제 및 특례 적용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는 2022년 기준을 작성된 2023년 도서관 통계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최신 도서관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고, 특례 적용 도서관과 특례 미적용 도서관을 사서 수 및 정보서비스 측면에 한하여 비교 분석한 점과 경북 지역 사서에 제한하여 인식 조사를 수행한 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서관 등록제의 특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연구이고 특히 탐색적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 주요 후속 연구의 주제 및 방향을 제안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자료 및 분석 안내서. 출처: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90154>
- 권나현 (2017). 공공도서관 사서배치현황과 법정 배치 기준의 타당성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4), 183-201. <https://doi.org/10.4275/KSLIS.2017.51.4.183>
- 김보일, 김명수, 안창호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09-13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109>
- 김신영, 차성중 (2022). 인구감소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 경북 의성군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95-117.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95>
-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 도서관법. (시행 2023.8.8.) 법률 제19592호.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1.6.23.) 대통령령 제31772호.
-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4.5.28.) 대통령령 제34533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9.20.) 법률 제20394호.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2024). 공공도서관 등록 업무 가이드라인.
- 박용수 (2017). [의안번호 547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박진규, 김인 (2016). 공공도서관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2), 365-391. <http://dx.doi.org/10.20484/klog.20.2.16>
- 박현희, 이성숙 (2015). 지역 지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93-41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393>
- 유경중 (2010).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윤명희 (2024). 공공도서관 '등록'의 법적 성격 및 등록관청 인식에 관한 연구: [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1(1), 31-5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031>
- 윤희윤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 윤희윤 (2018). 도서관 사서 배치의 법리적 쟁점과 법제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1-20. <http://dx.doi.org/10.16981/kliss.49.4.201812.1>
- 윤희윤 (2022).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5-2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05>
- 이성신, 나은엽, 이세나, 강운서, 김연희 (2024). 공공도서관 적정 사서인력 산출 용역. 예천: 경북 도서관.
- 이희수, 김기영 (2014).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도서관 요구에 관한 연구: 3개의 지역유형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1(1), 207-230.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207>
- 장경, 김혜영 (2024). 공공도서관의 지역정보서비스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141-165. <https://doi.org/10.16981/kliss.55.3.202409.141>
- 장덕현, 구본진 (2021). 도·농복합지역 공공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2), 125-14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2.125>
- 장문현 (2024).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수준 평가 및 유형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8(1), 67-83.
- 지방시대위원회 (2022. 2. 8.).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출처: <https://www.nabis.go.kr/policyDetailView.do?menucd=20&gbnCode=P50&refCode=20&poldx=6313>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7.10.) 법률 제19514호.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지정. 출처: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Arora, R. & Stoner, C. (2009). A mixed method approach to understanding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Product & Brand Management*, 18(4), 272-283.

doi:10.1108/10610420910972792

Babbie, E. R. (2001).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9th ed.). Belmont, CA: Wadsworth Thompson Learning.

Greene, J. C. (2007). *Mixed Methods in Social Inquiry*. San Francisco, CAL: Jossey-Bass.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 (2019). *Guide to Data and Analysis of Local Basic Living Infrastructure Supply Status*. Available: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gubun=rpt&pMetaCode=OTKCRK190154>

Chang, Durk Hyun & Koo, Bon Jin (2021). A research on the strategic plan of public libraries in urban-rural complex a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2), 125-14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2.125>

Jang, Kyoung & Kim, Hyeyoung (2024).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Chungcheong reg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3), 141-165. <https://doi.org/10.16981/kliss.55.3.202409.141>

Jang, Mun-Hyun (2024).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improvement levels of basis living infrastructure in depopulation area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Geographers*, 58(1), 67-83.

Kim, Bo-il, Kim, Myoung-su, & Ahn, Chang-ho (2015). A study on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 activation solution of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09-137. <https://doi.org/10.16981/kliss.46.4.201512.109>

Kim, Sin-Young & Cha, Sung-Jong (2022). A Study on the user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depopulation areas: focusing on Uiseong-gu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95-117.

<https://doi.org/10.16981/kliss.53.3.202209.95>

- Kim, Young-Seok (2013). An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aff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323-342.
- Kwon, Nahyun (2017). An analysis of staffing of public librarians and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4), 183-201. <https://doi.org/10.4275/KSLIS.2017.51.4.183>
- Lee, HeuiSoo & Kim, Giyeong (2014). Study on the needs of local residents for library services based on community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ree types of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07-230.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207>
- Lee, Seongsin, Rha, Eun youp, Lee, Sena, Kang, Yoon-seo, & Kim, Yeon-Hui (2024). Study on the Calculation of the Appropriate Number of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Yecheon: Kyeongbuk Library.
- Library Act. No.19592.
-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31772.
-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34533.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Library Policy Planning Team (2024). Guidelines for Public Library Registration Work.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1). Designation of Population Decline Area. Available: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Park, Hyun-Hee & Lee, Sung-Sook (2015). A study on the regional knowledge-information service: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393-41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393>
- Park, Jin kyu & Kim, In (2016). A study on equity in the public library service distribution: focus on Busa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20(2), 365-391. <http://dx.doi.org/10.20484/klog.20.2.16>
- Park, Yong-Soo (2017). [Bill Number 5477] Comprehensive amendment bill to the Library Law (Sponsored by representative Do, Jong-Hwan) review report.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2022, February 8). The 1 trillion won local government extinction response fund will focus on investing

i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 Available:

<https://www.nabis.go.kr/policyDetailView.do?menucd=20&gbnCode=P50&refCode=20&poIdx=6313>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No.19514.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No.20394.

Yoon, Hee-Yoon (2012). Strategie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

Yoon, Hee-Yoon (2018). Legal issues and legalization of librarian placement for publ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1-20. <http://dx.doi.org/10.16981/kliss.49.4.201812.1>

Yoon, Hee-Yoon (2022).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1), 5-2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05>

Yoon, Myung Hee (2024). A study on the legal meaning of public library 'registration' and the perception of registration authorities: focused on [Law No. 18547, comprehensive amendment, December 7, 202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31-58. <https://doi.org/10.3743/KOSIM.2024.41.1.031>

You, Kyeong-jong (2010). A Study on the Regional Disparity of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ir Foundation and Management.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Korea.